

# 감 사 원

## 주의요구 및 통보(시정완료)

제 목 지방소득세 부과·환급 및 체납처분 부적정

소 관 기 관 남양주시

조 치 기 관 남양주시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결정·경정 내역 등을 확인하여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 및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에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되는 법인지방소득세<sup>101)</sup>와 개인지방소득세<sup>102)</sup>가 미신고 또는 과소 납부된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부과·징수하고, 미납된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는 한편 과다 납부된 경우에는 환급해주고 있다.

### 2. 법인지방소득세 미부과

####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sup>103)</sup> 제89조, 제91조

101) 당초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었으나 2014. 1. 1.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변경됨

102) 당초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이었으나 2014. 1. 1.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변경됨

103) 「지방세법」 부칙(2014. 1. 1., 법률 제12153호) 제15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법인세의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일정한 기한<sup>104)</sup> 내에 그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남양주시는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신고 및 경정·결정내역을 통보받으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추징하여야 했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원 감사기간(2018. 4. 23.~5. 18.) 중 남양주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2014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매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10,000,000원 이상 법인세 결정·경정 내역 관련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남양주시는 [별표 1] “법인지방소득세 미부과 명세”와 같이 ■◆주식회사(대표이사 AD) 등 4개 법인이 법인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등 35,511,08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추징요건에 해당되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었다.

### 3. 법인지방소득세 미환급

---

104)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이내,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임

####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59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남양주시는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환급 내역을 통보받으면 법인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법인이 환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환급해주어야 했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원 감사기간 중 남양주시에 대하여 2014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매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10,000,000원 이상의 법인세 환급 내역 관련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남양주시는 [별표 2] “법인지방소득세 미환급 명세”와 같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AE) 등 3개 법인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총 24,102,270원(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하지 않고 있었다.

### 4.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처분 부적정

####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및 제97조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고, 그 다음 달 15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징수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는 한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남양주시는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고지 내역을 통보받으면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한 경우에는 본세에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하도록 독촉하고,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야 했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원 감사기간 중 남양주시에 대하여 2014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매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고지분의 납부 및 독촉·체납처분 실태를 확인한 결과, 남양주시(경제산업국 세정과)는 2014년 10월 AF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고지 내역(금액: 259,474,390원, 납부기한: 2014. 10. 15.)을 통보받은 후 납세자가 해당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독촉장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2018. 5. 16. 현재까지 미납상태인데도 체납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남양주시는 감사결과의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2018. 5. 10.부터 매월 통보되는 국세청 경정·결정 자료의 조치결과를 체계적으로 확인·관리하여 앞으로 지방소득세 부과·환급 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①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남양주시는 법인지방소득세는 2018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해 8월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등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고

#### **[통보(시정완료)]**

② 앞으로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의 신고·경정·결정내역을 통보받고도 지방소득세 부과 및 환급을 누락하거나, 지방세 미납자에게 대한 독촉장 고지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 법인지방소득세 미부과 명세

(단위: 원)

| 연번 | 법인명   | 귀속연도 <sup>1)</sup> | 국세청 통보    |            | 자료통보<br>공지일   | 자료이관일        | 법인지방소득세미부과 세액 |                   |                          |
|----|-------|--------------------|-----------|------------|---------------|--------------|---------------|-------------------|--------------------------|
|    |       |                    | 연월        | 추징법인세액     |               |              | 본세            | 가산세 <sup>2)</sup> | 계                        |
| 계  | 총 11건 | -                  | -         | -          | -             | -            | 24,645,300    | 10,865,780        | 35,511,080 <sup>3)</sup> |
| 1  | ■◆(주) | 2010년              | 2016. 2.  | 54,401,011 | 2016. 2. 17.  | 2016. 2. 1.  | 3,404,430     | 1,473,430         | 4,877,860                |
| 2  | ■◆(주) | 2011년              | 2016. 2.  | 91,569,021 | 2016. 2. 17.  | 2016. 2. 1.  | 7,064,610     | 3,057,560         | 10,122,170               |
| 3  | ■◆(주) | 2012년              | 2016. 2.  | 41,880,912 | 2016. 2. 17.  | 2016. 2. 1.  | 2,378,740     | 1,029,510         | 3,408,250                |
| 4  | ■◆(주) | 2013년              | 2016. 2.  | 18,309,251 | 2016. 2. 17.  | 2016. 2. 1.  | 593,050       | 256,670           | 849,720                  |
| 5  | ■◆(주) | 2014년              | 2016. 2.  | 11,900,298 | 2016. 2. 17.  | 2016. 2. 1.  | 519,580       | 397,160           | 916,740                  |
| 6  | -     | 2011년              | 2016. 8.  | 29,090,292 | 2016. 8. 16.  | 2016. 8. 4.  | 2,909,020     | 1,099,310         | 4,008,330                |
| 7  | -     | 2012년              | 2016. 8.  | 19,520,491 | 2016. 8. 16.  | 2016. 8. 4.  | 1,952,040     | 737,660           | 2,689,700                |
| 8  | -     | 2013년              | 2016. 8.  | 13,374,517 | 2016. 8. 16.  | 2016. 8. 4.  | 1,337,450     | 505,420           | 1,842,870                |
| 9  | -     | 2014년              | 2016. 8.  | 21,597,689 | 2016. 8. 16.  | 2016. 8. 4.  | 1,400,700     | 1,027,550         | 2,428,250                |
| 10 | -     | 2013년              | 2016. 7.  | 18,957,531 | 2016. 7. 14.  | 2016. 6. 28. | 1,895,750     | 734,030           | 2,629,780                |
| 11 | -     | 2013년              | 2015. 11. | 11,899,381 | 2015. 11. 16. | 2015. 11. 2. | 1,189,930     | 547,480           | 1,737,410                |

주: 1. 2014년 귀속분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20을 적용함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 2018. 5. 17. 4개 법인(11건)에 대하여 징수결정 후 고지서를 발송함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 법인지방소득세 미환급 명세

(단위: 원)

| 연번 | 법인명   | 귀속연도  | 국세청 통보    |             | 법인지방소득세미환급세액 |         |            | 비고          |
|----|-------|-------|-----------|-------------|--------------|---------|------------|-------------|
|    |       |       | 연월        | 법인세 환급액     | 본세           | 환급가산금   | 계          |             |
| 계  | 총 3건  | -     | -         | -           | 23,951,190   | 151,080 | 24,102,270 | -           |
| 1  | (주)□△ | 2015년 | 2017. 4.  | 267,596,380 | 16,132,290   | -       | 16,132,290 | 안분율 60.286% |
| 2  | -     | 2010년 | 2016. 10. | 24,637,860  | 2,463,780    | 151,080 | 2,614,860  | -           |
| 3  | -     | 2016년 | 2017. 5.  | 53,551,240  | 5,355,120    | -       | 5,355,120  | -           |

주: 1. 구 「지방세기본법」 제77조(2017. 3. 28.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일인 2015.

3. 23. 다음 날부터 2018. 5. 16.까지 1,150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환급가산금임

2. 2018. 5. 16. 및 같은 해 5. 17. 환급결정 후 같은 해 5. 18. 환급 조치함

3. 2016. 12. 27. 「지방세기본법」 제62조 개정으로 환급을 요청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만 환급가산금을 지급함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